

# 감정평가서

건명	오동현 소유물건(2025타경504364)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재선
감정서번호	D072501-2-0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인지사



지사장 이재구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재구

*이재구*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인지사 지사장 이재구



감정평가액	일억삼천사백만원정 (₩134,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재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오동현 (2025타경50436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기타 참고사항	-	2025.02.05	2025.02.04 ~ 2025.02.05
			작성일 2025.02.0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134,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3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계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제2층 제 202호로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기준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2월 05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02월 04일에 실시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층,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25번지 제2층 제202호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16번길 24						
이용상황	공동주택						
사용승인	2010. 04. 12.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물규모	지상 5층						
대상물건 면적(m <sup>2</sup> )	기호	층	호수	전유	공용	대지권	비고
	가	2층	202호	46.42	5.84	26.6288	다세대

## 4. 감정평가의 조건

-

## 5.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함.
- ② 본건의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된 토지·건물의 가액 배분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정한 '집합 건물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 비율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였음.
- ③ 본건 내부구조 확인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에 따라 부득이 외부 관찰, 주변 탐문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 1. 개요

#### (1)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적용은 부적절하고,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워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생략하였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음.

$$\text{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	면적(m <sup>2</sup> )		거래가액 (원)	전유면적 거래단가 (원/m <sup>2</sup> )	거래시점	비고
			전유	대지권				
a	장기동 123-1	○층 ○○○호	47.90	35.9285	140,000,000	2,922,756	2024.06.17.	-
b	장기동 126	○층 ○○○호	45.26	34.8300	115,000,000	2,540,875	2024.06.07.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호수는 표기하지 않음.

(출처: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거래사례로서 본건과 비교가능성이 큰 최근의 거래사례(a)를 선정함.

###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 (4) 시점수정

본건의 시점수정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평가하고 있는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연립다세대 매매 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시·군·구	연립다세대 매매 가격지수		시점수정치
	기준시점 적용지수 (2025.02.05.)	거래시점 적용지수 (2024.06.17.)	
인천광역시	95.8	96.9	0.98865(-1.135%)

※ 거래시점은 2024년 05월 지수를 적용함.

※ 기준시점은 2025년 01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4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	비교치	비고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등함.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대등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그 밖의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계		1.000	-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140,000,000	1.00	0.98865	1.000	46.42/47.90	134,134,418	134,000,000

※ 시산가액은 유효숫자 세 자리까지 표기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I. 참고가격자료

###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가격수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가격수준은 전유면적당 2,500,000 ~ 3,000,000원/㎡ 내외 수준으로 조사됨.
------	--

### 2. 인근 평가전례

기호	소재지	층/호	면적(㎡)		평가액(원) [전유면적당단가(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전유	대지권			
A	장기동 126-1	○층 ○○○호	57.45	42.85	156,000,000 [2,715,405]	2025.01.24.	법원 경매
B	장기동 127-2	○층 ○○○호	47.83	37.49	152,000,000 [3,177,922]	2024.12.16.	법원 경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동, 호수는 표기하지 않음.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전유면적(m <sup>2</sup> )	대지권(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장기동 125번지 제2층 제202호	46.42	26.6288	134,000,000	-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16번길 24	125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1층	8.64			
				2~5층 각	100.85			
				옥탑1층	9.36			
	동소	125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9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2호	46.42	46.42	13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대지권	26.54			
				209.9 x ----- 209.2		26.6288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67,000,000 67,000,000	
		합 계					₩134,000,000.-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계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전·답,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사용승인일 : 2010년 04월 12일)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급·배수시설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에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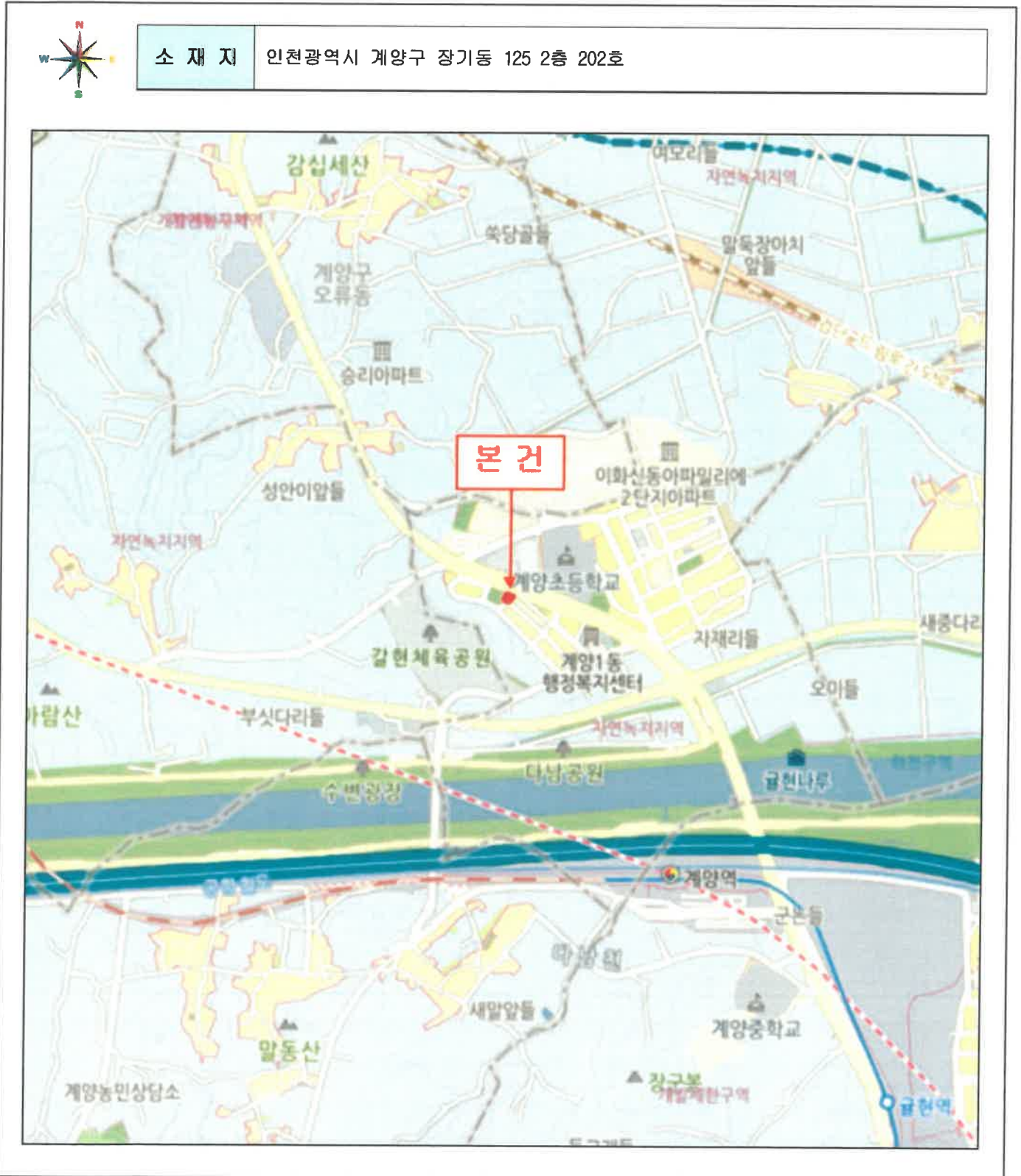
### (9) 공부와의 차이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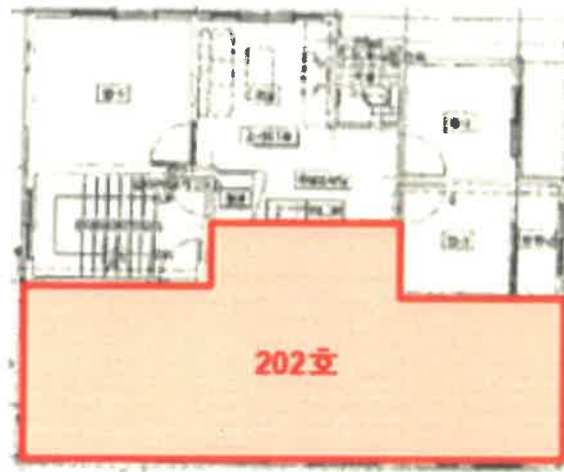
# 광역위치도



# 위 치 도



# 건물개황도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 사 진 용 지



[ 본 건 전 경 ]



[ 본 건 현 관 ]

# 사 진 용 지



[ 주 위 환 경 ]



[ 주 위 환 경 ]